

일반사무위탁 변경계약서

주식회사 에이치엘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前.주식회사 투게더한라시그마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이하 “위탁자”)와 삼정케이피엠지에이에이에스 주식회사(이하 “수탁자”) 간 2020년 11월 26일 체결한 일반사무위탁계약(이하 “원계약”)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사무위탁 변경계약(이하 “본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전 문

“위탁자”와 “수탁자”는 원계약 중 일부 내용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여 본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용어의 정의]

원계약에서 정의된 용어는 본 변경계약에서 달리 정하거나 문맥상 허용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변경계약에서도 동일한 의미를 갖는다.

제2조 [변경내용]

원계약 제8조 제2항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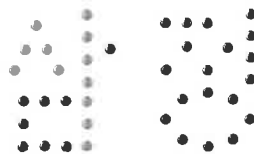
변경 전	변경 후
제8조 (보수) ② 제1항의 보수는 결산기에 금일천칠백오십만원(W17,500,000)(VAT 별도)으로 정하고, 매 결산기마다 해당 결산기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 말일까지의 기간을 연간 금액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수탁자”의 수탁업무 수행기간이 6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분기의 보수는 실제 업무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8조 (보수) ② 제1항의 보수는 결산기에 금일천칠백오십만원(W17,500,000)(VAT 별도)으로 정하고, 매 결산기마다 해당 결산기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u>제7결산기부터 청산종결 등기일까지의 보수 W13,942,308(VAT 별도)은 을의 청구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지급한다.</u> 다만 최초로 도래하는 결산기 말일까지의 기간을 연간 금액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수탁자”의 수탁업무 수행기간이 6개월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분기의 보수는 실제 업무수행기간을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제3조 [원계약과의 관계]



본 계약은 원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사항은 원계약에서 정한 사항이 그대로 적용된다. 본 계약의 내용과 원계약의 내용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기명날인 또는 서명란은 다음 페이지에]



“위탁자”와 “수탁자”는 본 변경계약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변경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서로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하기로 한다.

2024년 4월 일

“위탁자”

주식회사 에이치엘제일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2802호(삼성동, 트레이드타워)

청산인 김 동 기



“수탁자”

삼성케이피엠지에이에이에스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85길 28(역삼동, 성서공회빌딩)

대표이사 조 성 래

